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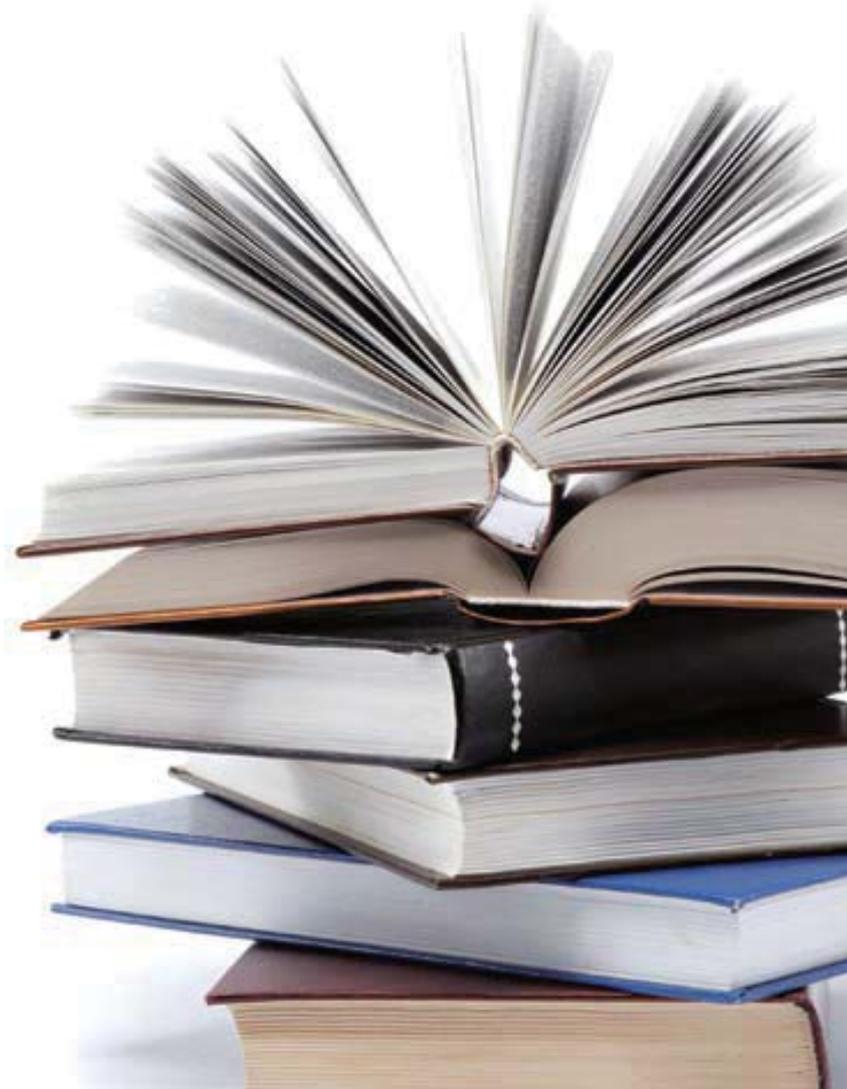


일본의 전통공예 진흥법제 및 현황 분석

손 현 진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일본의 전통공예 진흥법제 및 현황 분석

연구자 : 손 현 진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012. 12. 31.

[법제분석 요약]

○ 검토할 주요 문제

1. 일본의 「전통적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전통공예산업진흥을 위한 협회, 조합 등의 역할 및 지원 현황
3.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의 주요 업무
4.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한국 전통공예협동조합 설립방향에 대한 시사점

(1) 일본의 전통적공예산업의 관련 법제

- 일본의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법)은 전통적 공예품의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의 생활에 풍요롭고 윤택함을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일본의 전통법은 전통적 공예품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육성·계승되고, 전통적 공예품 산업재건, 후계자(전승자) 확보, 원재료 입수 등 전통적 공예품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임.
- 전통적 공예품의 지정은 ▲일상생활용으로 사용될 것,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공업적일 것, ▲전통적 기술 또는 기법에 의해 제조될 것, ▲원재료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 ▲일정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제조하고 종사하고 있는 것 등을 심사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정
- 현재 일본내 전통적공예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전국적으로 212 품목으로 조합중심의 공예공방의 형태로 존재

- 전통적공예품으로서 지정받으면 지정협동조합 등은 전통법에 따라 전통적공예품의 진흥을 위해 진흥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금융·세제조치 등 조성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경제산업대신은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의 기본적인 방향과 종사자의 후계자 확보 및 육성,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의 계승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수요개척 등에 관한 지침 등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에 관해 기본지침을 정함.
- 전통법 제9조에 따라 전통적공예품 제조사업자 또는 제조협동조합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종사자 연수, ▲기술 또는 기법 개선, ▲원재료 연구, ▲수요개척, ▲원재료 공동구입 등 사업 공동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신상품 개발 또는 제조 등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지정 인정을 받음.
- 전통적공예 진흥계획 실시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후계자 육성사업, ▲기술·기법 기록수집 및 보존, ▲원재료대책 사업, ▲수요개척 사업, ▲의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음.

(2)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

- 「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이하, 전산협회)는 전통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공예산업 진흥기관으로 일반소비자가 전통적 공예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산지조합 등 그 밖의 기관의 협력을 얻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산협회의 주요업무로는 ▲인재육성 및 기술·기법 계승사업, ▲산지지도사업, ▲보급추진사업, ▲수요개척사업, ▲그 밖의 진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내 공예공방과 소비자 사이에서 각종 사업수행을 통해 전통공예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전산협회는 전통법 제24조에 의해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 보조금, ▲전통적공예품 산업지원 보조금, ▲전통적공예품 산업부흥 대책지원 보조금 등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전통공예 산업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전통공예 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이 없으며, 일원화된 정책과 제도 등의 부재로 효과적으로 전통적 공예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은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성을 바탕으로 잠재력은 풍부하나 이와 연계되는 유통·판매 및 홍보 등 관련 산업의 부족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후계자 및 전문경영인력의 부족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으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사단법인)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등이 전통공예의 전승과 보존, 공예문화 개발·육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책 및 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전통공예 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원자재 구입의 곤란, ▲후계자(전승자)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산업의

준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필수적임.

- 무엇보다도 공예품만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통공예산업 진흥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 따라서 일원화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진흥법 제정이 시급

(4) 한국 전통적공예협동조합 설립방향에 대한 시사점

- 일본은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산지조합 그 밖의 기관들이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통공예 산업과 관련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책을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총괄·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통공예 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또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지역 전통공예품을 한군데 모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사 분야 전통공예품 공방 통합을 확대하고, 전통공예협동조합을 형성하여 공동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전통공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공예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 차

I. 분석의 배경	1
II. 일본의 전통적공예산업의 현황	2
1. 전통적공예산업의 개요	2
2. 일본 전통공예의 특징	3
III. 일본의 전통공예산업 관련 법제 분석	4
1.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법)	4
(1) 「전통법」 제정	4
(2) 「전통법」 제정의 배경	4
(3) 주요 내용	5
2.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	14
(1)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 개요	14
(2)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 주요업무	16
(3)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의 주요사업	16
3.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 보조	23
IV.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4
1. 우리나라 전통공예 산업의 현황	24
2.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의 문제점	27
(1) 전통공예 관련 입법의 부재	27
(2) 규모의 영세성	28

(3) 원자재 구입의 곤란	29
(4) 후계자(전승자) 및 전문인력의 부족	30
3. 우리나라 전통공예품 산업 발전방안	30
V. 분석결과 및 결론	31
1. 전통공예산업 개선방안	31
2. 한국 전통공예협동조합 설립방향에 대한 시사점	32
참 고 문 헌	35

I. 분석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30여 만명의 전통공예 종사자들이 전통공예를 계승·발전 시켜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예산업 종사자는 총 29,148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14,7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재별로는 도자기공예의 인원이 13,88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됨.¹⁾
- 전통공예품은 전통적인 재주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실용성, 기능성, 효율성, 예술성을 겸비한 공작물로서 노동집약적인 수공업의 성격이 강함.
 - 이러한 노동집약적 수공업의 한계 때문에 중화학을 추진력으로 한 고등성장 과정에서 관심도와 기여도가 저하
- 우리나라 전통공예는 가족중심의 소규모 경영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와 인프라가 취약하여 대부분 경영 환경이 열악한 실정
- 또한 체계적인 유통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통공예품 생산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높고, 판매보다는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변동에 대처가 미흡하며,²⁾ 대부분의 공예품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대중화와 시장 확대가 곤란
- 국내 공예산업 육성정책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인식결여와 비일원화된 지원과 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

1)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

2) 공예업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작업체 8.5%, 유통업체 5.0%, 제작과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가 86.5%, 사업형태로는 개인사업체 90.6%, 법인 3.5%, 기타 5.9%로 개인사업체가 제작과 유통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공예산업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 전통공예산업을 지원·육성정책이 시급함.

- 전승자에 의해 전통기술이 이어지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내부적 자생력 확보와 유통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통공예협동조합」 설립이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나아가 전통공예 기술의 지속적인 계승·발전을 위해 지원과 더불어 관계 법령 및 제도를 입안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상황과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전통적 공예품을 보호·육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경제산업성대신(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통적공예산업 진흥협회」가 구성되어 전통적공예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서 전통적공예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원정책을 펴나가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의 전통공예산업의 현황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전통적 공예품의 보존과 전승, 판매 및 유통, 전통공예 지원정책과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공예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Ⅱ. 일본의 전통적공예산업의 현황

1. 전통적공예산업의 개요

- 전통공예란 이전부터 귀족계급, 지배계급이 사용한 귀중품, 장신구, 제사용구 등 「예술공예」와 서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온 일용품,

기능성 실용품 등 「민예품(이후, 산업공예)」이 「전통공예」로서 발전하게 됨.³⁾

- 전통공예, 전통산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1975년에 시행된 「전통적공예품의진흥에관한법률」 이후부터 이러한 용어와 의미를 합쳐서 「전통적공예품산업」으로서 불리게 됨.⁴⁾
- 현재 일본의 전통적공예품 산업은 매년 수요 감소⁵⁾와 장기간 경기 침체에 의한 개인소비 감소, 후계자(전승자) 부족⁶⁾ 등으로 매년 격감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 부흥정책, 창조도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공예 산업이 산지산업 활성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 일본 전통공예의 특징

- 일본의 전통공예는 공예공방을 중심으로 각 지역 특산품의 특성에 맞춰 발달되어 있으며 전통공예가 생활 공예로서 시민의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있음.
- 공예공방은 다수 또는 소수 종업원이 있는 「중소기업형 공방」과 가족 중심의 「가내수공예형 공방」,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작가로 활동하는 개인 작업 중심의 「개인공방」 등 그 형태가 다양함.

3) 安次富長昭 「伝統工芸の危機に直面して」, 『新沖縄文学』 26,(1972), p. 52.

4) 権 修珍, 「沖縄県伝統的工芸品産業の現状に関する考察」, 『政策科学』, 11-1, 2003. 9, p.74.

5) 전통공예품의 수요감소의 주요원인으로 ①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②국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③대량생산방식에 의한 값싼 생활용품의 보급, ④해외로부터 수입품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6) 일본 전통적공예품의 산지 종사자수는 1975년 대비 약 1/3로 감소('75년 26만 → '08년 8만)하였고, 종사자 고령화('08년 50세이상 종사자 비율 64%, 30세 미만 5.6%), 판매 부진 등으로 전통적 공예품 후계자를 받아들일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經濟産業省製造産業局 伝統的工芸品産業室, 『伝統的工芸品産業をめぐる現状と今後の振興施策について』 2011. 2)



- 개인작가 중심의 소규모 공방은 제작과 유통을 겸하며 판매상 또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향이 많으며, 지역자치단체·지역조합과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 이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예가의 부단한 노력과 공예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애착이 있었기에 가능

Ⅲ. 일본의 전통공예산업 관련 법제 분석

1.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법)

(1) 「전통법」 제정

- 「전통법」은 1975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로 제정되어, 1992년, 2001년 개정을 거쳐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로 최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 법은 일정지역에서 주로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통적 공예품이 민중의 생활 속에서 육성·계승되어 내려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을 고려
- 이와 같은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에 풍요롭고 윤택함을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⁷⁾

(2) 「전통법」 제정의 배경

- 이 법은 1960년대 후반 일본 내 전통적 공예품산업 재건 바람에 힘입어 법제정 작업이 시작됨.

7) 經濟産業省製造産業局 伝統的工艺品産業室, 『伝統的工艺品産業をめぐる現状と今後の振興施策について』(2011. 2) p.3.

- 일본 내 공해문제, 도시과밀화 등 고도성장에 따른 폐해가 표면화된 가운데 대량소비, 일회용 기계문명 생활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전통적인 것으로 회귀하고 일과 물건에 대한 진정한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바람이 제기가 됨.
- 또한 전통적공예품의 후계자 확보와 원재료 입수 곤란 등 문제로 인해 산업으로서 존립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부진이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미침.⁸⁾
-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된 전통법에 의해 국가의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
- 都道府県에 있어서는 독자적 기준에 의해 전통적공예품의 지정, 전통공예사 인정 등 시행하며 전통적공예산업의 진흥에 힘씀.

(3) 주요 내용

① 전통적공예품의 지정

- 경제산업대신은 산업구조심의회 의견에 청취하고 공예품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전통적공예품으로 지정한다.

제2 조 【전통적공예품의 지정 등】

- 一. 주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 것
- 二. 그 제조 과정의 주요 부분이 수공업적인 것
- 三.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일 것⁹⁾

8) 일본의 전통적공예품 생산의 기본이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원재료, 기술 및 기법을 고수하며 복잡한 공정으로 거쳐 생산됨. 그리고 전통적 공예 산업의 규모가 소규모(1사 평균종사자수는 5.2인)로 대량생산이 불가능함.(經濟産業省製造産業局 伝統的工艺品産業室, 『伝統的工艺品産業をめぐり現状と今後の振興施策について』 2011. 2)

- 四.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재료가 주된 원재료로서 사용 및 제조되고 있는 것일 것
- 五.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제조 또는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것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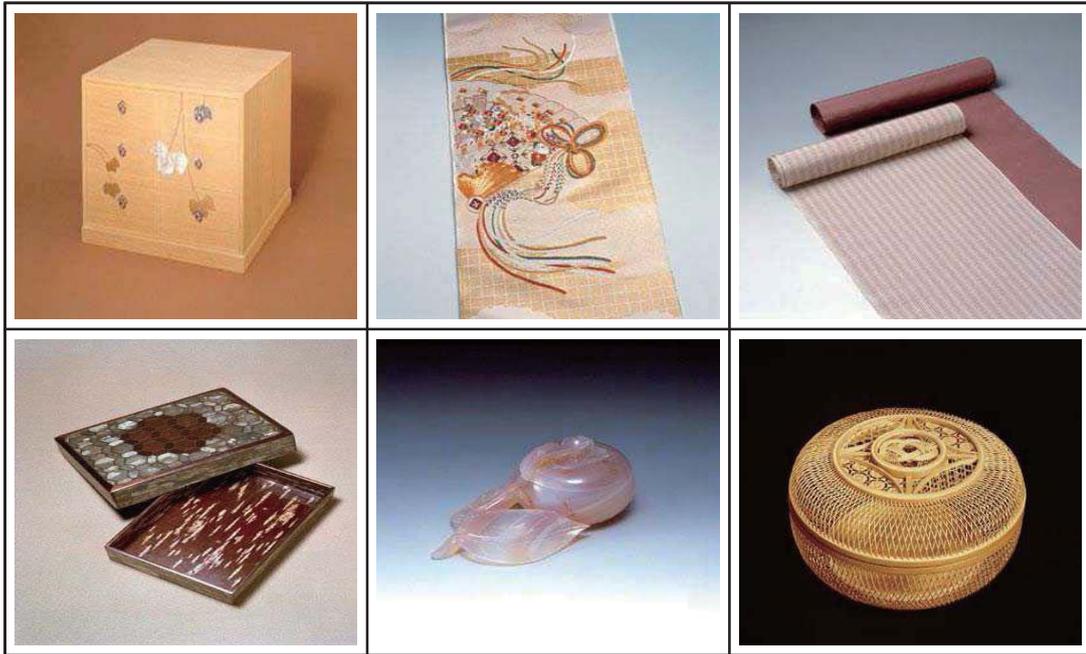
- 위 규정에 의해 전통적공예품의 지정은 해당 전통적공예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기술 및 기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원재료에 의해 전통적공예품이 제조된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함.
- 현재 일본내 전통적공예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전국적으로 212품목 (2011.7 현재)
 - 식물(33), 염색품(11), 그 밖의 직조물(5), 도자기(31), 칠기(23), 목공품·죽공품(28), 금공품(14), 불단·불구(16), 화지(9), 문구(9), 석공품(4), 귀석세공(2), 인형(8), 그 밖의 공예품(16), 공예재료·공예용구(3)¹⁰⁾

【대표적인 전통적공예품】



9) 일본의 전통적 공예품 지정을 위한 기술이나 기법은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것으로 원재료 또한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것에 한함. (經濟産業省製造産業局 伝統的工芸品産業室, 『伝統的工芸品産業をめぐる現状と今後の振興施策について』 2011. 2)

10) <http://kogeihin.jp/crfts/intrduction/category>



- 전통적공예품의 지정 신청은 사업협동조합 등에 의해 지정요건을 갖춘 공예품이 제조된 지역을 관할하는 都道府県の 지사를 경유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하면서 이루어지며 경제산업대신은 지정의 취지를 공시함.
-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규정에 의해 전통적공예품에 대해 사정변경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전통법 제2조 각 호에 열거한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구조심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 내용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¹¹⁾

② 전통적공예품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 전통적공예품 지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요건은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1/2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상공조합 및 政令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관·규약을 가진 그룹(단체)으로 되어 있음.¹²⁾

11) 『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第2条 6-7.

12) <http://kougeihin.jp/crfts/course/989>

- 지정 신청을 하는 조합은 전통적공예품 지정을 받은 후에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모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
-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전통적공예품 지정 신청서』로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서 준비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지정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산업대신에 제출함. 都道府県 지사 등으로부터 경제산업국을 거쳐 경제산업성의 담당과에 제출되어 대신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제산업대신이 전통적공예품으로서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짐.

③ 전통적공예품의 공표

- 전통적공예품으로서 지정을 받은 공예품은 그 명칭과 같이 다음 3가지 내용이 경제산업성 고시로서 관보에 게재되며 일반에 공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 一. 전통적으로 사용된 원재료 一. 해당 전통적공예품이 제조된 지역
--

- 경제산업대신은 위의 3가지 해당되는 지정내용을 갖춰졌을 때 전통적공예품으로서 지정함.

④ 전통적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지침

- 경제산업대신은 전통적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하여야 함.

제 3 조 【기본지침】

- 一. 전통적공예품 산업 진흥의 기본적인 방향
- 二. 전통적공예품 종사자의 후계자 확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三. 전통적 기술 또는 기법 계승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四. 전통적공예품 수요 개척에 관한 사항
- 五. 전통적공예품 또는 전통적인 기술 혹은 기법을 사용한 신상품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사항
- 六. 그 밖의 전통적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경제산업대신은 기본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시에는 산업구조심의회 의견 청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함.

④ 진흥계획

- 전통적공예품으로서 지정 받으면 지정협동조합 등은 전통법에 따라서 전통적공예품의 진흥을 위해 진흥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지방 공공단체 등 조성조치(보조금, 금융, 세제조치 등)를 받을 수 있음.
- 제1차 진흥계획은 5~8년의 중장기에 걸쳐 지역(산지) 진흥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전통적 기술(기법)의 유지·발전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시야에 두고 장기적 발전에 있어 무리가 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진흥계획 작성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 대다수가 참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이 필요¹³⁾
- 진흥계획에는 진흥사업의 사업 명칭, 내용, 효과, 소요자금, 사업에 정기간, 자금조달계획 등 계획기간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13) 經濟産業省告示第519号, 伝統的工艺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第三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伝統的工艺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指針を定めたので, 同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き公表(2000.7.10)

세우는 동시에 산지 현황, 생산 상황 및 전망, 원재료 확보 현황 등 진행계획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같이 기재함.

제 6 조 【진흥계획의 진흥사업 사항】

- 一. 종사자의 후계자 확보 및 육성과 종사자의 研修에 관한 사항
- 二. 기술 또는 기법의 계승 및 개선 그 밖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三. 원재료 확보 및 원재료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
- 四. 수요 개척에 관한 사항
- 五. 작업장 그 외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六. 원재료의 공동구입, 제품의 공동판매 그 외 사업 공동화에 관한 사항
- 七. 품질의 표시, 소비자에게 적정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八. 고령자인 종사자, 기술에 숙련된 종사자 그 외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九. 그 외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차 진흥계획이 종료된 후에도 과제로서 남아있거나, 경제·사회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진흥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인정을 받아 진흥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음.¹⁴⁾
-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판매사업자(전통적공예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과 같이 수요개척에 관한 사항, 제품의 공동판매, 소비자에게 적정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진흥계획」을 작성하여 진흥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음.¹⁵⁾

14) Id.

15) 『伝統的工艺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7条.

⑤ 활성화 계획

○ 활성화 계획은 전통법 제9조에 의한 계획으로 제조사업자 또는 제조협동조합(특정제조협도조합 제외) 단독 혹은 공동으로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都道府県 지사를 경유해 경제산업대신에 제출 해당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인정을 받음.

제 9 조 【활성화 계획】

1. 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2. 기술 또는 기법의 개선 그 외 품질 개선에 관한 사업
3. 원재료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업
4. 수요 개척에 관한 사업
5. 원재료의 공동구입, 공동판매 그 외 사업 공동화에 관한 사업
6.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신상품의 개발 또는 제조에 관한 사업

⑥ 진흥계획실시에 있어서 경비 보조

- 보조금은 전통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통적공예품 산업의 진흥과 지진 등에 의해 재난을 입은 특정재해구역의 전통적공예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등 정비, 원재료 확보 등 지원함으로써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
- 필요경비는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¹⁶⁾

16) <http://www.meti.go.jp/information/data/c120125aj.html>

1. 후계자육성 사업
전수자가 없다는 산지의 절실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공예품산지에서 실시하는 후계자 연수사업에 대한 보조
2. 기술·기법 기록수집·보존사업
전통적공예품 기술 및 기법에 대해 자료 수집과 기록필름·기록문헌을 만드는 것에 대한 보조
3. 원재료대책 사업
전통적공예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정된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수 가능한지 현지조사, 대체가능한 원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해 보조
4. 수요개척 사업
전통적 기술이나 기법에 의해 신상품 등 개발하거나 새로운 수요 개척, 동향 파악을 위한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보조
5. 의장개발 사업
전통적공예품의 디자인 개발과 그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평가회, 평가회 성과에 대한 검토회에 대한 보조

■ 보조대상경비¹⁷⁾

사업명	경비내용	보조율
후계자 육성·창출 사업	강사경비 및 여비, 사무국 직원 여비, 연수경비, 통신연락비, 교재비, 연수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간단한 공구류 구입비, 연수실 임차비, 자료구입비, 통역고용료, 번역료, 아르바이트 비용, 보험료, 기기·도구류 임차비, 모집안내·포스터 작성비 또는 외주비, 발송비	2/3 이내
수요개척· 意匠개발 사업	위원·전문가 사례비 및 여비, 사무국직원여비, 출전비 및 여비, 회의장 대여 및 회의비, 사전조사비(현지조사 등), 인쇄비(회의자료, 양케이트용지·보고서 등), 전시장	2/3 이내

17) 経済産業省, 『平成24年度 伝統的工芸品産業復興対策支援補償金(産地活性化事業)』 p.5.

사업명	경비내용	보조율
	운영·철거비, 장치비, 기기등 임차료, 출품물 포장 및 운송비, 보험료, 외주비, 전시회장내 실연이 있을 경우 실연 등 사례비, 원재료비(필요최소한 양), 통신연락비, 통역고용료, 광고비(포스터·판플렛·안내장작성비, 발송비, 게재비 등), 아르바이트 고용금, 영상자료 등 작성비, 잡역무비, 소모품비, 디자인비, 신상품시작비, 그 밖에 경비(문헌구입비, 방사선측정검사, 검정료, 특허출원관련비용 등)	
산지진흥사업	위원 및 전문가 사례비(여비포함), 회의장 대여 및 회의비, 원재료 수집·분석·조사비, 외주비, 인쇄비, 기록문헌 등 작성비, 통신연락비, 통역고용료, 아르바이트 고용금, 영상자료 등 작성비, 잡역무비, 소모품비, WEB작성비, 그 밖에 경비(문헌구입비 등)	2/3 이내
산지프로듀서사업	산지 활성화 사업에 요하는 경비로서 해당 실시사업내용에서 경제산업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후계자육성·창출사업, 수요개척·의장개발사업, 산지진흥사업 항목 참조, 단 인건비, 부동산구입비는 제외)	2/3 이내
산업설비 등 정비사업	전통적공예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기기 등 해당 사업내용에서 경제산업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예, 기와 가마, 녹로 등. 단 부동산 구입, 건물 건설비용 제외)	정액
원재료 확보·시작품 제작사업	통신연락비, 시작품제조비, 운송비, 위원·전문가 사례비, 조사여비, 회의비, 자료수집비, 영상자료 등 제작비, 보고서 작성비, 원재료비, 분석조사비, 외주비, 인건비, 관리비(사무소 임차료, 광열비, 비품비 등) *인건비, 관리비 등은 시작품 제작기간 중에 한함.	3/4 이내

⑦ 전통적공예품의 표시

- 전통법 제20조에 의해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지정 받은 전통적공예품은 각각 상품에 전통적공예품으로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전통적공예품은 정밀한 유사품이 많으며 일반소비자들이 식별하기에 매우 곤란하여 전통적공예품의 건전한 보급을 위해 「전통마크」를 부착, 일반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이 표시는 특정제조협동조합이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진흥계획 및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장의 인정을 받은 「전통증지표시사업실시규정」에 의해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이 실시
- 전통적공예품의 표시를 위해 (재)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전통마크를 사용한 인지를 「傳統証紙」라고 하며, 이 전통인지에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명시¹⁸⁾
 - 「경제산업대신지정전통적공예품」 문자
 - 「전통적공예품의 명칭」
 -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의 명칭」

2.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

(1)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 개요

- 일본의 전통공예 문화가 오늘날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이하, 전산협회)」의 역할이 크다. 전산협회는 경제

18) 経済産業省, 『伝産法に基づき指定・振興計画策定指導』 p.22.

산업대신의 지정을 받은 전통적 공예품 등을 육성하며 또한 수요 개척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전통법」은 전통공예산업 진흥기관으로 전산협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회는 전통적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조사·연구, 수요 개척, 제조 기술 및 원재료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전산협회는 전국의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일반 소비자가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산지조합 그 밖의 기관의 협력을 얻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공예공방과 소비자 사이에 시장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산협회를 중심으로 시행된 각종 사업으로 전통적 공예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선행되었고, 현대공예 및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제23조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의 설립】

명칭 중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은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협동조합 등을 설립시 사원 또는 설립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해 설립할 수 있다 .

2.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하, 협회)의 설립 등기 신청서에는 제조협동조합 등을 설립시 사원 또는 설립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산업대신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 주요업무

제24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전통적공예품 제조 사업에 관한 경영 개선 및 합리화, 그 외 해당 사업의 건전한 경영에 관계되는 조사, 연구 및 지도
2. 전시회 개최 그 밖의 수요 개척
3. 회원에 대해서 전통적공예품에 관한 수요 상황, 제조 기술 또는 기법, 원재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전통적공예품 산업에 관한 진흥계획 및 공동진흥계획 작성 및 실시에 대한 지도, 조언
5. 전통적공예품의 원재료, 제조과정, 품질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통적공예품의 품질 표시에 대해 지도, 조언
7. 전통적공예품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에 숙련된 종사자 인정
9. 활성화 사업, 연대활성화 사업 및 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
10. 그 회 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 그 밖의 전산협회 정관에 따르면 전산협회의 업무에는 전통적공예품 및 전통적공예품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 사업 및 협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필요한 업무를 함.

(3) 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의 주요사업

① 인재육성 및 기술·기법 계승사업¹⁹⁾

- 전통 공예사 인정사업
전통적공예품의 고도 제작기술·기법을 장래 계승하기 위해 전

19) 経済産業省、『伝産法に基づき指定・振興計画策定指導』p.22.

통법 제24조 제8호에서 정한 숙련된 종사자의 인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전통공예사」를 인정

○ 전통적공예품 산업대상사업

전통적공예품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산업대신 지정 전통적공예품 및 미지정공예품 산지업계 관계자, 그 밖의 모든 업계활성화에 공헌한 ‘개인’을 대상으로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에 관해 현저히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

- 그 밖의 자주사업으로 산업대상 이외에 산지조합의 추천을 받아 전통공예공로자, 산지공로자 등을 표창

○ 아동·학생 대상 전통적공예품 교육사업

전통적공예품 제조기술을 가진 전통공예사 등을 소·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제작을 공개 시연하고, 아동·학생이 제작 체험 등을 함으로써 전통적공예품이 가지는 의의와 기술·기법, 원재료 등에 대해 지도하고, 교사 등 주변에 대해서도 전통적공예품의 보급·계몽을 촉진함.

○ 전통적 공예마을 체험·교류사업

학생 및 사회인 등이 전통적공예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공예품 산업을 이을 수 있는 전통공예사 후계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공예품 제작시연 및 제작체험을 실시하는 “전통적공예품 체험전”을 실시

② 산지지도사업²⁰⁾

○ 지정산지 진흥지도사업

지정산지조합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흥사업에 관한 지도·조언과 전문가에 의한 각종 조사에 의해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조언을 함으로써 향후 산지진흥에 도움을 줌.

20) 一般財団法人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会, 『平成24年度 事業計画書 収支予算書』 p.2.



- 지정산지조합에 대한 진흥지도 : 지정산지조합 등이 책정한 진흥 계획, 공동진흥계획, 전통표시실시규정에 관한 지도조언 등을 하는 한편, 국가와 연대하여 활성화사업, 연대활성화 사업 및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정보 제공
 - 검사체제 정비촉진사업 : 전통적공예품과 국내외 유사상품과의 명확한 식별을 함으로써 소비자에 오인 및 혼란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전통적공예품 표시의 공정하고 엄격한 검사체제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사지도원을 지정공예품 산지에 파견하여 검사체제를 지도
 - 자주사업으로 전통적공예품 표시에 관한 지도 및 표시사업 촉진 : 전통적공예품 품질 향상·보급개발을 촉진하기 위한‘전통마크’ 사용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소비자에 대해 전통적공예품 「傳統証紙」 부착을 향상을 위한 사업
- 산지조사·진단사업
지정산지조합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진단 희망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진행구상을 가진 산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해결 대책, 향후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조언
 - 전통적공예품 제조시 필요한 도구,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대체안 등 전통적공예품 제조기반 강화를 위해 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산지를 지원하여 모범사업 수행 모델로서 전국 전통적공예산지에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전통적공예품 산업의 유지발전에 기여

③ 보급추진사업²¹⁾

- 전통적공예품 보급사업

21) 一般財団法人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会, 『平成24年度 事業計画書 収支予算書』 p.3-4.

전통적공예품 및 전통적공예품산업 활동에 대한 국민각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광고매체를 선정하여 널리 선전함과 동시에 관계단체와 같이 연대하여 전국적인 보급촉진에 노력함.

- 신문, 잡지, 포스터를 시작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일반소비자에 대해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게재한 정보지 발행
- 전통적공예품 선전 팸플릿을 작성하여 관계자치단체, 지정산지조합 등에 배포하여 전통적공예품의 이해와 인식을 높임.
- 지정산지조합, 관계단체, 지방공공단체 등이 주최하는 전시회, 평가회, 경기회 등을 공동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협회상을 증정하는 등 전국 각지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대해 출품협력 등 하면서 전통적공예품 소개에 노력

○ 전통공예 靑山(아오야마)센터 사업

- 새로운 개념의 전통적공예품 종합전시시설로서 소비자를 비롯하여 관계자에 대한 전통적공예품을 널리 소개, 수요환기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
- 현대생활에 맞는 새로운 전통적공예품, 계절감을 나타내는 전시방법에 의해 전통적공예품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지에 다시 피드백 하는 등 산지정보발신장 및 교류의 장소로서 활용
- 기존의 「전국전통적공예품센타」를 2012년 4월 동경 아오야마로 이전하여, 「전통공예 아오야마 스퀘어」 창립²²⁾



22) <http://www.kougeihin.jp/release/3754>

- 전통적공예품을 통한 해외문화와 융합에 의한 새로운 문화 창조
- 차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일본 전통문화 계승
- 국내외 유력기업과 협력을 통한 전통적공예품의 용도 확대 등 새로운 사업 전개
- 지구환경에 맞는 전통적공예품을 통한 환경친화형 사회에 공헌

【주요사업 내용】

① 전시 사업

- 상설전시 : 전통적공예품을 중심으로 산지 제품을 널리 전시소개, 보급 및 수요개척을 목적으로 전시회를 개최. 이 상설전시회를 통해 내방자의 경향,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출품산지조합에 보고함.
- 특별전시 : 출품공예품의 보급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요구 파악을 위해 특별전을 실시

② 전통적공예품 수집 및 소개

- 전통적공예품에 관한 정보·자료수집과 전시소개 : 산지에서 화제가 된 공예품, 우수한 전통적공예품을 수집하여, 전통적 기술·기법의 자료 보존을 하며, 그 외 각종 전시 기회를 활용하는 등 유용한 이용을 장려하여 소비자에 대한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이해촉진에 도움

③ 전통적공예품 상담

-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상담 : 전통적공예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을 배치하여, 산지정보나 기술·기법의 내용, 입수방법 등 내방자의 다양한 질문과 상담에 응함.

④ 공예품 클리닉

- 자주사업으로서 회원에 대해 공예품의 수리 및 상담을 통해 공예품에 대한 올바른 취급방법을 설명하는 동시에 공예품 실비수리를 실시

⑤ 회원 운영

- 전통적공예품에 관한 흥미와 애착을 보다 높이기 위해 공예품 애호가를

대상으로 전통적공예품의 보급·발전을 목적으로 친목회를 운영하여 회원을 확대

- 전통적공예품 월간 추진 사업
 -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종합PR 사업인 「전통적공예품월간」 사업을 소비자에 보다 넓고 깊게 인식시켜 보다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
 - 「전통적공예품 월간 전국대회」, 「전통적공예품 월간 국민회의 전국대회」 등을 경제산업성, 전통적공예품 월간추진회의 및 개최지 추진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전통적공예품의 공로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
 - 「어린이 지역공예품 체험 학습」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통적공예품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
 - 자주사업으로서 「2012 전국전통공예품전」을 개최하여 전국의 경제산업대신 지정전통적공예품 전시를 통해 전통적공예품의 애호층을 강화 하는데 노력
 - IT를 활용한 전통적공예품 활성화 사업
 - 홈페이지를 개설 「전통적공예품 인터넷 판매」를 활용하는 등 전통적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확장하는 한편, 현대 생활에 있어 소비자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최신 3D를 이용한 제품소개 등 실시)
- ④ 수요개척사업²³⁾
- 전통적공예품 산업의 최대 중요과제로서 수요 확대를 위해 콩쿠르 실시, 신상품 개발지원 및 전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전통적공예품의 매력을 어필하여 수요 증대를 유도

23) 一般財団法人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会, 『平成24年度 事業計画書 収支予算書』 p.6.

- 전통적공예품산업 공쿠르 전시회사업
전국 유일의 전통적공예품 공모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시회를 목표로 전국의 전통적공예품을 공모하고 표창하는 사업.
 - 응모된 작품은 전문가에 의해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은 내각총리대신상, 경제산업대신상 등 수여
- 전통적공예품 포럼사업
전통적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현대 생활양식에 접목한 신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사람이 중심으로 디자이너 등 타 분야와 정보교환의 장으로 그 성과를 발표하고 유통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새로운 수요개척에 힘씀.
- 전통적공예품기술·기법활용제품 전시사업
전통적 기술·기법을 활용하고 현대 생활양식에 접목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소비자 및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전통적 기술·기법의 재인식 시켜 수요개척에 연결
- 해외개발 사업
전통적공예품의 새로운 수요확대를 위해 전통 있는 해외 저명 브랜드와의 공동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 해외 현지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정보교환을 거쳐 시작품을 제작하거나, 해외 공예품 관계자를 일본으로 초대하여 국내관계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노력

⑤ 그 밖의 진흥사업²⁴⁾

- 창조회원기업과의 연계사업추진
창조회원인 전통적공예품 산업 이외 유력기업등과의 전통적공예

24) 一般財団法人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会, 『平成24年度 事業計画書 収支予算書』 p.6.

품 보급확대·수요개척을 위한 연대사업 추진

- 자주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조합과의 연대 추진
지정산지조합 등 조직화 추진 및 산지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실시
 - 일본전통공예사회 (180산지공예사회)
 - 전국전산회관운영연락협의회 (29회관)
 - 전국전산도자기조합협의회 (26산지)
 - 전국전산금속공예품조합협의회 (11산지)
 - 전국전통적공예품불단불구조합연합회 (14산지)
- 자주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종사자공제회 실시
전통공예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정공예품 산지종사자(사무국 직원 포함)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연대하여 가입자가 휴업중 소득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실시

3. 전통적공예품 산업진흥협회 보조

- 전통법 제24조에서 열거된 전산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제26조 【협회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협회에 대해 제24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2년도 보조금】

구 분	대 상	사 업 내 용	액 수
전통적공예품	일반사단법인	• 전통공예사 인정	5.0억엔

구 분	대 상	사 업 내 용	액 수
산업진흥보조금	및 일반재단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확보 • 포럼 사업 • 보급추진 등 각종 사업 	
전통적공예품 산업지원보조금	국가지정 전통적공예품 제조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확보대책사업 • 후계자 창출육성사업 • 관광 등 타 분야 연대 및 타 산지 연대사업 • 국내외 소비지 등 수요개척 사업 	3.6억엔
전통적공예품 산업부흥대책 지원보조금	민간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오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대책 사업 • 신상품개발 보조 • 일본브랜드 부흥 지원 • 수요개척사업(생산기반확립·강화, 후계자육성, 산지진흥사업, 산지생산 사업 등) 	2.0억엔

(자료 : 상무정보정책국, 전통적공예품 산업실 제공)

IV.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전통공예 산업의 현황

- 우리나라의 전통공예산업은 소규모 수공업에 의해 제조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산, 원자재 수요 및 기술개발 등의 창조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²⁵⁾
-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공예산업은 세계적인 역사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잠재력은 풍부하나 이와 연계되는 유통·판매 및 홍보 등

25) 김성민, 「공예산업의 활성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Nol. 11 No. 4 (2011.11), p. 179.

관련 산업의 부족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전통공예품에 대한 매출액 평균이 5천만원 이하인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며, 이는 전문경영능력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고급 장비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향후 공예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필요²⁶⁾
-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전통공예의 진흥과 관련된 법안이 없으며, 이로 인한 일원화 된 정책과 제도의 부재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통공예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전통공예 분야 진흥정책은 전통문화산업의전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기타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공예 관련 진흥정책 및 육성사업 현황】

주관부처	관련사업	추진사항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공예현황 실태조사, 공예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통공예자격시험제 시범사업
	무형문화재 제도	전통공예기술을 계승하는 무형문화재 지원, 전수회관을 통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종목 홍보 및 교육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의 집 일반인 교육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설치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예품 제작 및 전시판매 공간을 고성함으로써 공예품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제작지원

26) 문화체육관광부,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 2012.5, pp.67~68.

주관부처	관련사업	추진사항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연계
지식 경제부	전국공예품 대전 민속공예품 인증제도	공예품 산업화와 공예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진흥원과 통합
기획 재정부	정부조달전통공예품 제도	영세한 중요무형문화재, 명장 등 공예가의 판로를 지원
	국세청 전통향토기업 지정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한 전통 향토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및 세제혜택 제공
고용 노동부	대한민국 명장제도 기능전승자 제도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계승자 등 선정하여 장려금, 기능전승지원금 지급, 대한민국 장인 작품 박람회 개최

(자료 : 문화관광부 제공)

-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으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²⁷⁾』을 설립하여, 공예가와 디자이너, 문화산업전문가 등 문화예술계는 물론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공예와 디자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 교육, 연구,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에서 전통공예의 전승·보존과 공예문화 개발·육성을 위한 연구 및 보급활동을 통한 한국 전통공예 문화 발전에 기여

27) 2000년 공예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공예산업 중장기 계획안 수립, 공예산업 실태조사, 공예소비 실태 및 연관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규모와 인력, 재정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남에 따라 2010년 3월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재)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재편됨.

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전통공예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후계자양성
- 전통공예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공예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 지원
- 전통공예문화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
- 전통공예문화를 재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전시회개최
- 해외공예 관계자와의 지식 및 기술교류를 위한 해외전시 및 비교전시회개최
- 문화재 및 기능보유자, 명장지정 발굴 및 추진
- 전통공예단지 조성 및 상설전시과 설치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진흥사업

2.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의 문제점

(1) 전통공예 관련 입법의 부재

- 현재 공예품만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예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법률적 토대에 입각하여 공예품을 문화산업의 범주에 일부 포함시킨 「문화산업진흥기본법」²⁸⁾에서 공예품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 그 밖에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²⁹⁾, 「산업디자인

2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9071호, 2009.1.1. 시행) 제2조 (정의)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마. 생략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언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29)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인진흥법」 등에서 공예산업 인프라 구축, 공예산업 유통기반 확충, 해외진출 지원, 우수 공예상품 개발, 공예산업 육성, 기능인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확히 전통공예라고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³⁰⁾

- 전통공예기술의 보존과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공예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며, 전통공예 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부처들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각 부처의 비 일원화된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예산업육성을 위한 통합진흥법 제정이 시급함.

(2) 규모의 영세성

-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은 국내시장의 투자 규모의 영세성으로 양산화가 불가능하며, 자본이나 고용의 형태가 소규모의 가내수공업적인 생산형태를 이루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가내수공업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디자인 규격 및 표준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함.
 - 대부분의 공예업체의 사업형태 구성은 개인사업체 90.6%, 법인 3.5%, 기타 5.9%로 법인을 제외한 업체들 중 사업자 등록을 한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30) 위주영, 「한국 전통공예정책에 대한 일고찰」, 남도민속학회, 남도민속연구 제20집, 2010.6, p. 167.

업체는 93.9%로 대부분은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구성³¹⁾

- 개인사업자 90%가 공예단체 또는 협회에 가입되어, 제작한 공예품을 전시회(42.1%), 공방 내 매장(15.8%), 페어 및 박람회(10.5%)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³²⁾
- 공예작품의 홍보 및 마케팅도 전시회를 참가하여 직접 홍보(30%)하거나 페어 및 박람회(25%), 인터넷 등 IT 활용(15%)을 하였으며, 특별한 홍보 수단이 없는 경우도 1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³³⁾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예와 관련된 정책에 수혜를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75%나 되었고,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가 10%에 지나지 않음.³⁴⁾
- 대부분의 전통공예품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생산된 공예품의 판로개척의 어려움(50%)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영자금 부족(40%)으로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⁵⁾
 - 공예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개척과 판매경로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공예조합의 재정적 열악한 상태로 시행이 어려움.

(3) 원자재 구입의 곤란

- 전통공예 산업 종사자 대부분은 정부지원을 통한 원자재 구입부족으로 원·부자재 구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공예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재료구입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공예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수

31) 문화체육관광부,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 p. 74.

32) 상계서, pp. 77~82.

33) 상계서, p. 83.

34) 상계서, p. 84.

35) 상계서, pp. 87~88.

립시 원재료 확보 및 원활한 공급을 연계하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소요되는 원자재를 필요시마다 직접 구하거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소량으로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에 힘들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4) 후계자(전승자) 및 전문인력의 부족

- 우리나라의 전통공예품의 후계자 전문 기능 인력이 부족하여 참신한 디자인 개발 및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전통공예 산업자체의 존재가 퇴색되어 가고 있음.
-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비효율적인 작업은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임금의 체불과 최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후계자(전승자) 발굴이 어려우며, 실제 전통기술의 전승자가 거의 없는 상태임.
- 전통기술 전승자의 단절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통로가 차단된 것으로 그 결과 전통이 현대에 어우러지지 못하고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에서 소외되어 소비자 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전통공예 기술 장인들의 고령화 현상과 기술이 구두로만 전해지고 대부분 문서화되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계자 및 전문인력 유치로 전통기술정보를 서면화 하고 체계화 하여, 후대에 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우리나라 전통공예품 산업 발전방안

- 공예산업은 한 국가와 민족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표현하는 예술적, 문화적 속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산업적인 속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중심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나 친환경시대의 환경친화적 소재와 제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예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동남아에서 생산·유통된 저가 공예품과 고품격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로 우리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공예품 시장 속에서 나아가야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통공예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공예 진흥 관련 법률 및 정책이 필요하여, 또한 전통공예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 공예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부문에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지원이 필수적임.

V. 분석결과 및 결론

1. 전통공예산업 개선방안

- 일본은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산지조합 그 밖의 기관들이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도 전통공예 산업과 관련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책을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총괄·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통공예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공동 직매장 등 직거래 판매 등 판매·유통에 대한 지원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 전통공예품 종사자들은 능력과 경륜을 갖춘 작가들이 독립된 제작기반인 공방을 갖추고 공예품을 생산하기를 희망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공예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적공예품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을 갖춰 외국인들도 선호할 수 있는 제품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자금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통공예 활성화 정책이 시급함.
- 또한 전통공예 관련 체험상품을 정보화 마을처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방안과 함께 공예인들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한국의 공예품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2. 한국 전통공예협동조합 설립방향에 대한 시사점

- 현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전통공예품을 한군데 모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사 분야 간 공방 통합을 확대하고, 전통공예협동조합을 형성하여 공동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설 자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공방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각 공예품들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의 전통공예협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동협동조합 운영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예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공예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문화/예술, 산업/기업, 관광 등 부서별로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부서마다 공예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혜 대상에 대한 시각도 부서마다 다양화되어 있어 공예 관련 사업들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공예사업의 진행이 어려움.
 - 일본의 경우 「전통적공예품산업 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공예 공방과 소비자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전통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짐.
 -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전통공예 관련 지원책이 하나의 통합전략으로 일원화를 이루
- 향후 전통공예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전통공예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성민, 「공예산업의 활성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Nol. 11 (2011.11)
- 위주영, 「한국 전통공예정책에 대한 일고찰」, 남도민속학회, 남도민속
연구 제20집, 2010.6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
- 安次富長昭 「伝統工芸の危機に直面して」, 『新沖縄文学』 26, (1972)
- 権修珍, 「沖縄県伝統的工芸品産業の現状に関する考察」, 『政策科学』,
11-1, 2003. 9
- 経済産業省製造産業局 伝統的工芸品産業室, 『伝統的工芸品産業をめぐる
現状と今後の振興施策について』 2011. 2)
- 経済産業省告示第519号, 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第三条
第1項の規定に基づき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
な指針を定めたので, 同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き公表(2000.7.10)
- 経済産業省, 『平成24年度 伝統的工芸品産業復興対策支援補償金(産地
活性化事業)』
- 経済産業省, 『伝産法に基づき指定・振興計画策定指導』 p.22.
- 一般財団法人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会, 『平成24年度 事業計画書 収
支予算書』 p.2.
- <http://kougeihin.jp/crfts/introduction/categories>
- <http://kougeihin.jp/crfts/course/989>



<http://www.meti.go.jp/information/data/c120125aj.html>

<http://www.kougeihin.jp/release/3754>